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에 특허의 심사를 위한 인력 16명(6급 16명), 상표·디자인의 심사를 위한 인력 12명(6급 12명),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 2명(6급 1명, 7급 1명) 및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를 위한 인력 2명(7급 1명, 8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특허청 소속기관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1명(4·5급 1명)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운영 인력 1명(7급 1명)을 각각 증원하며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의 개정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 및 상표·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,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28765호, 2018. 3. 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, 종전에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18. 3. 9. ~ 3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5호 중 “정부3.0”을 “정부혁신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95명을 두되, 심판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”을 “96명을 두되, 심판관 중 40명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56명은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교육기획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지식재산교육과장 및 국제교육과장”을 “각 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육기획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19조 단서 중 “3퍼센트”를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3퍼센트”를 각각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제7장(제2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3조(평가대상 정원)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,425”를 “1,457”로 하고, 1. 공무원 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“1,393”을 “1,425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1,391”을 “1,423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 “56”을 “69”로,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3”을 “29”로, 행정주사보 “24”를 “25”로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약무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21”을 “22”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보건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8”을 “19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425”를 “1,457”로 하고, 1. 공무원 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“1,393”을 “1,425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1,391”을 “1,423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 “25”를 “38”로,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3”을 “29”로, 행정주사보 “10”을 “11”로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약무주사보·시설주사보·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23”을 “24”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보건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8”을 “19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44”를 “1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4”를 “145”로 하며,
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32”를 “33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44”를 “14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4”를 “145”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31”을 “32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33”을 “3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3”을 “34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간호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2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34”를 “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4”를 “35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간호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2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]

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(제23조 관련)

업무	정원	평가기간
특허 심사업무	16명 (6급 16명)	2020년 12월 31일까지
상표·디자인 심사업무	12명 (6급 12명)	2020년 12월 31일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대변인) 대변인은 <u>서기관</u>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제3조(대변인) ----- <u>부이사관</u> <u>·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생략)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 1. ~ 4. (생략) 5. 청 내 <u>정부3.0</u>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관리 6. ~ 13. (생략) ⑤ (생략)	제6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 <u>정부혁신</u> ----- ----- ----- 6. ~ 13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특허심판원) ①·② (생략)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<u>95명</u> 을 두되, 심판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	제16조(특허심판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96명</u> 을 두되, 심판관 중 40명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56명은 서기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
④ ~ ⑧ (생략)

제17조(국제지식재산연수원) ① (생략)

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,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, 교육기획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지식재산교육과장 및 국제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단서 신설>

③ ~ ⑤ (생략)

제19조(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국제지식재산연수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각 과장 -----

-. 다만, 교육기획과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·운영하는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-----

----- 5퍼센트 -----

제20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, 별표 6의 정원 중 1명(9급 1명)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 다만,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

제20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-----.

----- 5퍼
센트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5
퍼센트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5퍼
센트-----

별표 8과 같으며, 별표 8의 정원
중 1명(9급 1명)은 임기제공무
원으로 임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3조(평가대상 정원) 특허청에
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
사항은 별표 9와 같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425</u>	<u>1,457</u>	+32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<u>1,393</u>	<u>1,425</u>	+3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391</u>	<u>1,423</u>	+3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56</u>	<u>69</u>	+13
·	·	·	
·	·	·	
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3</u>	<u>29</u>	+16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24</u>	<u>25</u>	+1
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 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 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 보 · ·	<u>21</u> · ·	<u>22</u> · ·	+1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보건서 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· ·	<u>18</u> · ·	<u>19</u> · ·	+1

[별표 2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,425</u>	<u>1,457</u>	+32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) 계	<u>1,393</u>	<u>1,425</u>	+3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,391</u>	<u>1,423</u>	+3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5</u>	<u>38</u>	+13
·	·	·	
·	·	·	
공업주사·농업주사·약무 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3</u>	<u>29</u>	+16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10</u>	<u>11</u>	+1
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 공업주사보·농업주사보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건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· · 	<u>23</u>	<u>24</u>	+1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보건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· · 	<u>18</u>	<u>19</u>	+1

[별표 3]

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44</u>	<u>145</u>	+1
일반직 계	<u>144</u>	<u>14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 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임업사무관 · 해양수 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 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 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32</u>	<u>3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]

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44</u>	<u>145</u>	+1
일반직 계	<u>144</u>	<u>145</u>	+1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 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 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 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 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 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31</u>	<u>3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]

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3</u>	<u>34</u>	+1
일반직 계	<u>33</u>	<u>34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 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간 호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<u>2</u>	<u>3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]

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4</u>	<u>35</u>	+1
일반직 계	<u>34</u>	<u>35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 업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간 호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<u>2</u>	<u>3</u>	+1
·	·	·	
·	·	·	